

12. 이상화고택 및 서상돈고택 관리 ·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08년 2월 4일
- 심사
 -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 -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(2008. 2. 19) 상정 및 의결

2. 주요골자

- 이상화고택 및 서상돈고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.
-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
 - 이상화고택 및 서상돈고택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04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~15조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~6조

4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훈)

- 군인공제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이상화고택과 서상돈고택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여 민간이 가진 인력과 기구,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,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5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재경)

- 본 동의안은 2007. 11월 준공(보수공사)한 「이상화고택」 과 2007. 12월 군인공제회로부터 기부채납된 「서상돈고택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관리 · 운영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서,
- 동 시설물의 관리 ·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,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, 대구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“민간위탁 대상사무”로 볼 수 있으며,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동 시설물의 주요 현황은
 - 이상화고택(중구 계산동 84, 82-1, 82-3, 87-3번지, 부지 376.1㎡, 고택 목조 2동 64.5㎡)은 2005. 10월 군인공제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후 총 사업비 1억 6천만원(시비100%)을 투자하여 2007. 5월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하여 2007. 11월에 준공하였으며, 주요시설로는 안채, 사랑채, 대문 1식이 있음.
 - 서상돈고택(중구 계산2가 100번지, 8.25/7,012.20㎡(지분), 목조4동 88.32㎡)은 2007. 6월부터 군인공제회가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2007. 10월 준공 후 12월 대구시로 기부채납한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목조 3동과 대문 1식이 있음

○ 위탁운영 사무 및 위탁조건은

- 위탁운영사무는 동 고택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며,
- 위탁조건은 이상화고택과 서상돈고택을 같이 관리하면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전액 시수입으로 납부하고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비로 보조하며,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·수탁협약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.

○ 동 고택 시설물의 민간위탁 계획은

- 본 동의안이 금번 회기에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“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”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인력과 기구, 책임능력과 공신력, 문학과 관련 사업추진여부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('08. 3월)한 후 금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이며,
- 위탁기간은 2008. 4. 1 ~ 2009. 12. 31까지 1년9개월로 할 계획임.
- 따라서, 관리비용 절감으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, 고택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《예상수지 분석》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수 입	지 출 (인건비, 운영비 등)	수지상태
직영관리	0	27,518	△27,518
위탁관리	0	24,000	△24,000

☞ 세부내역 : “붙임 1” 참조

○ 다만, 동 고택 시설물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는

- 수탁기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 및 시 재정부담 최소화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,
- 위·수탁협약 체결시는 수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과 의무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.

6. 질의·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보험가입은 ?	○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회계과에서 일괄가입함.
○ 방문객을 위한 안내인 배치 및 운영계획은 ?	○ 관련 인물을 설명할수 있는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고, 시집판매, 체험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임.

7. 토론요지

-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